9.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년 9월 30일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기획조정실장)

○ 회부일자 : 2022년 10월 4일

○ 상정일자 : 제29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2년 10월 17일), 원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12]에 따라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12)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주요내용

○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대상은 '대구경북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4건임.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정미정)

○ 이 개정조례안은

○ 이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4개의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2023년도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에 출연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 해당 출연기관 사업의 내용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금 지원 여부를 선행적으로 승인하는 사항으로 출연규모는 향후 '23년 예산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이번 동의안에서는 4개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동의 여부만을 사전 심의하게 됨.

1 대구경북연구원[13] 출연금 : 43억원

○ 조직현황

- 기관명 : 재단법인 대구경북연구원
- 대 표 : 유 철 균('22.8.1.~'25.7.31)

13) **대구경북연구원 : ('90. 6.17. 설립)** /대구·경북의 지역개발 과제 및 정책대안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연구·개발하고, 지역경제/사회 전반에 관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정리·체계화하여 이를 지역사회에 널리 보급·이용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연구기관

- 기　구 : 연구부(5연구실·도청센터, 7센터·1연구소), 기획경영실, 부설센터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104 계명대학교 동산관 5-8층
- 인　　력 : 정원 85명 / 현원 80명 (원장 1, 연구직 57, 관리직 12, 전문직 10)

○ 정·현원

(단위 : 명, 2022. 9. 30. 기준)

구분	합계	원장	연구직				관리직			전문직				계약직	
			소계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소계	2·4급관리원	5·6급관리원	소계	전문위원	비서	행정지원	위촉연구원	행정사무원
정원	85	1	61	10	51		12	6	6	11	9	1	1	-	-
현원	80	1	57	7	39	11	12	7	5	10	8	1	1	16	3
박사학위자	54/65		51/57	6/7	34/39	11/11				3/8	3/8				

주 : 1) 전문직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2019년부터 전환된 인력
2) 위촉연구원은 수탁용역연구과제 예산으로 과제 수행기간 동안 위촉
3) 연구원 전체 **현원 80명** 중 박사 학위자는 **54명**으로 69.2%를 차지
4) 행정사무원은 일반회계 계약직 인건비 예산으로 기간제 행정보조원
5) **연구직 현원 57명** 중 박사학위자는 **51명**으로 89.5%를 차지
6) **연구직+전문위원 현원 65명** 중 박사학위자는 **54명**으로 83.1%를 차지

○ 주요내용

▶ 지역발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중장기 비전 및 지역 정책개발과 관련된 조사·연구 등의 수행을 위하여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대구경북연구원」의 고유 기능 수행과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하는 것임.

〈 연도별 출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안)
대구광역시	3,800	3,900	4,300	4,300	4,300	4,300	4,300
경상북도	3,900	3,800	4,300	3,800	4,300	4,300	4,300

○ 검토결과

► 이 동의안은「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14]과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 제3조제1항[15]에 따라, 2023년도 대구경북연구원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시비 43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 2022년 대구경북연구원 정책연구사업 수행 현황

(2022. 9. 30. 현재, 단위 : 건)

구분		대구경북	대구	경북	합계
정책 연구사업	기본과제*	20	13	19	52
	정책과제**	-	50	48	98
	소계	**20**	**63**	**67**	150

* 기본과제 : 연구원 자체기획연구과제(기획연구과제, 특별연구단 및 전문분야연구조직 고유연구사업 등)

** 정책과제 : 시·도 제안 정책연구과제(중장기정책 및 수시·현안 과제 등)

※ 정책동향리포트 발간 96건, 위수탁 연구사업 56건, 연구공유사업 49건 수행

■ 대구경북연구원은 2022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나”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음.

14) **제13조(운영재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15) **제3조(출연금)** ① 시 및 구·군은 제2조의 기금 및 연구원의 시설비와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경영평가 주요 지적사항('22년)

- (**경영시스템**) 실제적인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조직혁신 노력 필요
- (**사업성과**) 지역사회 의견수렴 및 인식 제고 한계, 연구 인력의 전문성이 사업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지 점검 필요

► '23년 대구시 출연 요구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34억 7,000만원(81%), 연구사업비 6억 3,000만원(14%), 경상경비 2억원(5%)으로,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이며, 출연액 규모는 '19년 이후 동결된 43억원임.

〈 '23년 출연금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2022년 출연액	2023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시비	시군비	기타
계		4,300	**4,300**	4,300		4,300		
인건비	1년	3,500	**3,470**	3,470		3,470		
연구사업비	1년	600	**630**	630		630		
경상경비 등	1년	200	**200**	200		200		

► 민선 8기 출범 후 경상북도에서 대구경북연구원 분리 주장[16]이 나온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시의회와의 소통도 필요해 보임. 또한 '23년 본예산 출연 이후에도,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출연액 조정 및 사업비 정산 등 철저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하겠음.

16) 경북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도정질문 : 대구경북연구원 분리 필요성 질문(박선하 의원)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17] : 2억 5,000만원

○ 주요내용

►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연구기관인「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하는 것임.

가. 대구시 연도별 출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안)
출연금	200	250	250	250	250

나. 지방행정연구원 최근 5년간 출연 규모(정부, 지자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정 부	2,329	2,854	2,854	2,854	2,854
지자체	3,300	4,150	4,150	4,150	4,150
'22년 일반회계 규모 : 136.31억원 ☞ 정부출연금 : 28.54억원(21%), 지자체출연금 : 41.5억원(31%), 자체수입 등 : 66,27억원(48%)					

○ 검토결과

► 이 동의안은「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제3조제3항[18]에 따라, 2023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시·도별 정책연구과제 연구사업비와 연구인력 인건비 등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시비 2억 5,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1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84. 9월 설립(원장-김일재) / 지방행정·재정·세제 및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연구·조사,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평가 연구, 연구용역 수탁 등의 업무를 수행

18) **제3조(출연금)**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요구 총액 41억 5,000만원에 대하여 특광역시·도별 전년도와 동일한 분담금을 요청하였음.

※ 16개 시·도 : 2억 5,000만원, 세종시 : 1억 5,000만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주 수입원으로하는 지방행정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 분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자체별 예산규모나 재정력 지수에 따른 차등지원 방안 등을 건의할 필요가 있겠음.

- ('22년) 서울시 예산 규모(일반+특별회계) : 44조 2,190억원
  대구시 예산 규모(일반+특별회계) : 10조 1,444억원

※ 출처 : 지방재정 365(통합재정개요)

< 최근 3년간 대구시 정책연구과제, 정책이슈 리포트 지원 현황>

비고	연 도	부 서 명	연구과제
정책 연구 과제	2020	버스운영과	대구시 관내 코로나19 피해 여객 자동차터미널 지원방안 연구
	2021	정책기획관	대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
	2022	정책기획관	대구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정책 이슈 리포트	2020	교육협력정책관	대구국채보상운동기념관 리모델링 후 복합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2021	일자리노동정책과	대구광역시 일자리의 진단 및 통합운영 방안 연구
	2022	일자리노동정책과	직업계고 졸업생 기업 정착률 제고를 위한 정책 사업 발굴

3 지방공기업평가원[19] 출연금 : 6,000만원

○ 주요내용

►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설립 및 투자타당성 전문검토, 경영자문, 지방공기업 정책연구 등 지방공기업의 발전·지원을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이 동의안은「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제3항[20]과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제1항[21]에 따라, 2023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인건비와 평가 사업비 등 운영비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4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 연도별 출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안)
출연금	60	60	54	54	54	60

►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요구 총액 10억 800만원에 대하여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 지방공기업 수를 각각 50%씩 반영하여 지역별 차등 배분하였으며, 출연 및 출연액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음.

【 '23년 주요 시 · 도별 출연 내역(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경북	경남
출연금	78	60	60	54	54	54	84	66	72

19) **지방공기업평가원** : '92. 3. 9. 설립(대표-최치국) /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평가, 교육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

20)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21) **제76조(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① 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 전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별 다음 연도 출연금 요구안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4 한국지방세연구원[22] 출연금 : 3억 6,800만원

○ 주요내용

►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지방세 관련 공무원 교육, 학술행사 개최 등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이 동의안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제1항[23]에 따라,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인건비와 연구 사업비 등 운영비 지원을 위해 시비 3억 6,8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출연액은 전년 대비 3,000만원 증가하였음.

〈 연도별 출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안)
출연금	319	339	342	320	338	368

22) **한국지방세연구원** : '11. 2.28. 설립(대표-배진환) /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 연구·조사·교육

23)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 출연액 3억 6,800만원은「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제1항[24]의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반영한 것임.

- 3,066,390백만원('21년도 보통세)× 1.2/10,000 =368백만원

한편, **지방재정분권 단계별**[25] 시행 계획에 따른 출연금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고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20. 9. 8.)을 통해 '22년부터는 출연금 적용비율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액의 1만분의 1.2로 하향 조정되었음. 하지만 **보통세의 신장률**** 추이를 감안할 때 그에 비례한 출연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22→'23년 8.6%↑) 따라서, 현행처럼 자치단체 보통세 세수 증가에 기인한 출연금 자연 증가 방식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합리적인 출연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20년까지) 1만분의 1.5 → ('21년) 1만분의 1.3 → ('22년이후) 1만분의 1.2

** 대구시 보통세 세입결산액 추이(최근 5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	2021
결산액	2,264,084	2,278,769	2,458,302	2,818,177	3,066,390
증가율 (전년비)	6.4%	0.6%	7.9%	14.7%	**8.8%**

24)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20. 9. 8.개정, '21. 1. 1.시행)
1. 1만분의 1.2 / 1만분의 0.5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부칙 제2조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3으로 한다.

25) **지방재정분권 1단계('19~'22년) : 지방소비세액을 부가가치세 11% →21%로(10%↑) 확대**
2단계('23년~) : 지방소비세액을 부가가치세 21% →25.3%로(4.3%↑) 확대

참 고 출연 심의요구서

대구경북연구원

<table>
<tr><td>출연대상</td><td>○ 기 관 명 : 재단법인 대구경북연구원
○ 대 표 : 유 철 균
○ 일반현황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104 계명대학교 동산관 5~8층
• 인 력 : 정원 85명 / 현원 80명
• 주요사업 : 정책연구사업, 정책대응 및 정보공유사업, 지역사회 소통협력사업, 대구경북 상생협력 연구지원 등</td></tr>
<tr><td>출연금액</td><td>○ <u>출연 예정금액 : 4,300백만원(시비)</u>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사업기간</th><th rowspan="2">2022년 출연액</th><th rowspan="2">2023년 요구액</th><th colspan="5">재원별</th></tr>
<tr><th>계</th><th>국비</th><th>시비</th><th>시군비</th><th>기타</th></tr>
<tr><td>계</td><td></td><td>4,300</td><td>4,300</td><td>4,300</td><td></td><td>4,300</td><td></td><td></td></tr>
<tr><td>인건비</td><td>1년</td><td>3,500</td><td>3,470</td><td>3,470</td><td></td><td>3,470</td><td></td><td></td></tr>
<tr><td>연구사업비</td><td>1년</td><td>600</td><td>630</td><td>630</td><td></td><td>630</td><td></td><td></td></tr>
<tr><td>경상경비 등</td><td>1년</td><td>200</td><td>200</td><td>200</td><td></td><td>200</td><td></td><td></td></tr>
</table></td></tr>
<tr><td>출연필요성</td><td>○ 지역발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구·경북 전략산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싱크탱크로서의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지원 필요</td></tr>
<tr><td>근거·법령</td><td>○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 제3조(출연금) ① 시 및 구·군은 제2조의 기금 및 연구원의 시설비와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td></tr>
<tr><td>지도감독
부서의견</td><td>○ 대구경북연구원은 대구·경북 공동 출연기관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매년 시도 협의를 통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 주요 사업으로 장기발전구상 및 시책개발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연구조성사업, 대외 교류협력사업, 연구간행물 발간사업 등을 추진
○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시·도 협의를 통하여 수립 중인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td></tr>
</table>

한국지방행정연구원

<table>
<tr><td>출연대상</td><td>○ 기 관 명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재단법인)
○ 대 표 : 김일재
○ 일반현황
• 소 재 지 :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1
• 인 력 : 정원 104명 / 현원 104명(정규직 94, 공무직 10)
• 주요기능 :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조사·연구, 지방자치행정 당면과제 조사 연구, 사업(예비)타당성 조사·평가 연구 등</td></tr>
<tr><td>출연금액</td><td>○ <u>출연 예정금액 : 250백만원(시비)</u>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사업기간</th><th rowspan="2">2022년 예산액</th><th rowspan="2">2023년 요구액</th><th colspan="5">재원별</th></tr>
<tr><th>계</th><th>국비</th><th>시비</th><th>시군비</th><th>기타</th></tr>
<tr><td>계</td><td></td><td>250.0</td><td>250.0</td><td>250.0</td><td></td><td>250.0</td><td></td><td></td></tr>
<tr><td>인건비</td><td>1년</td><td>189.0</td><td>189.0</td><td>189.0</td><td></td><td>189.0</td><td></td><td></td></tr>
<tr><td>경상비</td><td>1년</td><td>21.0</td><td>21.0</td><td>21.0</td><td></td><td>21.0</td><td></td><td></td></tr>
<tr><td>연구사업비</td><td>1년</td><td>40.0</td><td>40.0</td><td>40.0</td><td></td><td>40.0</td><td></td><td></td></tr>
</table></td></tr>
<tr><td>출연 필요성</td><td>○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국가와 17개 시·도의 출연금으로 운영</td></tr>
<tr><td>근거·법령</td><td>○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출연금)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td></tr>
<tr><td>지도감독 부서의견</td><td>○ 2023년도 우리 시 출연금에 대한 사업계획은 연구과제 수행비,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로 편성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td></tr>
</table>

지방공기업평가원

<table>
<tr><td>출연대상</td><td>○ 기 관 명 : 지방공기업평가원
○ 대 표 : 최 치 국
○ 일반현황 (소 재 지) 서울 서초구, (정원/현원) 65명/63명
(주요기능)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컨설팅, 정책연구, 교육훈련 등</td></tr>
<tr><td>출연금액</td><td>○ <u>출자·출연 예정금액 : 60백만원(시비)</u>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 백만원]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사업기간</th><th rowspan="2">2022년 예산액</th><th rowspan="2">2022년 요구액</th><th colspan="5">재원별</th></tr>
<tr><th>계</th><th>국비</th><th>시비</th><th>시군비</th><th>기타</th></tr>
<tr><td colspan="2">계</td><td></td><td>54.0</td><td>60.0</td><td></td><td></td><td>60.0</td><td></td><td></td></tr>
<tr><td colspan="2">인건비 등</td><td>1년</td><td>24.5</td><td>24.0</td><td></td><td></td><td>24.0</td><td></td><td></td></tr>
<tr><td colspan="2">주요 사업비</td><td>1년</td><td>29.5</td><td>36.0</td><td></td><td></td><td>36.0</td><td></td><td></td></tr>
<tr><td rowspan="2"></td><td>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td><td>1년</td><td>23.2</td><td>30.0</td><td></td><td></td><td>30.0</td><td></td><td></td></tr>
<tr><td>지방공기업발전 지원사업 등</td><td>1년</td><td>6.3</td><td>6.0</td><td></td><td></td><td>6.0</td><td></td><td></td></tr>
</table></td></tr>
<tr><td>출연 필요성</td><td>○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일원화, 정책연구 강화, 임직원 교육 지원, 시·도 및 지방공기업 설립·투자 타당성 전문 검토 등 평가원 설립목적에 맞는 기능 수행과 지방공기업 발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출연 필요</td></tr>
<tr><td>근거·법령</td><td>○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6조 ① 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 전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별 다음 연도 출연금 요구안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td></tr>
<tr><td>지도감독 부서의견</td><td>○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92년)한 기관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설립 및 투자타당성 전문검토, 경영자문, 지방공기업 정책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
○ 지방공기업의 경영지도, 임직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등 경영합리화 지원을 통해 지방재정에 기여
○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계획·예산·결산 등은 자치단체에서 이사 4~5명(시도별 순번제 위촉)이 포함된 이사회(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지방공기업 지원이라는 출연의 목적 달성 가능</td></tr>
</table>

한국지방세연구원

<table>
<tr><td>출연대상</td><td>○ 기 관 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 대 표 : 배 진 환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
• 인 력 : 정원 92명 / 현원 69명
• 주요사업 : 지방세제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td></tr>
<tr><td>출연금액</td><td>○ <u>출연 예정금액 : 368백만원(시비)</u>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 백만원]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사업기간</th><th rowspan="2">2022년 예산액</th><th rowspan="2">2023년 요구액</th><th colspan="5">재원별</th></tr>
<tr><th>계</th><th>국비</th><th>시비</th><th>시군비</th><th>기타</th></tr>
<tr><td colspan="2">계</td><td></td><td>338</td><td>368</td><td>368</td><td></td><td>368</td><td></td><td></td></tr>
<tr><td colspan="2">기관 운영비</td><td>1년</td><td>229</td><td>253</td><td>253</td><td></td><td>253</td><td></td><td></td></tr>
<tr><td colspan="2">주요 사업비</td><td>1년</td><td>109</td><td>115</td><td>115</td><td></td><td>115</td><td></td><td></td></tr>
<tr><td></td><td>연구사업</td><td>1년</td><td>37</td><td>40</td><td>40</td><td></td><td>40</td><td></td><td></td></tr>
<tr><td></td><td>자치단체지원</td><td>1년</td><td>72</td><td>75</td><td>75</td><td></td><td>75</td><td></td><td></td></tr>
</table></td></tr>
<tr><td>필요성</td><td>○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td></tr>
<tr><td>근거·법령</td><td>○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td></tr>
<tr><td>지도감독 부서의견</td><td>○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정기 간행물 발간,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음</td></tr>
</table>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독자적인 (가칭)대구정책연구원의 연구인력을 얼마정도로 예상하는지?	○ 작지만 효율적인 조직으로 구상하고 있으며, 약 50명내외로 구상하고 있음.
○ 50여명을 한꺼번에 채용하는지, 단계별로 채용할 계획인지?	○ 별도 채용계획을 수립해서 할 예정이며, 신설되는 만큼 공개채용 방식으로 새롭게 채용될 예정임.
○ 내년 3월에 출범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시일이 촉박하지 않은지?	○ 조례제정, 발기인 창립 총회, 행안부 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계획에 맞춰 신속히 추진할 예정임.
○ 출연금 규모가 전년도와 같은데 분리가 될 경우 운영경비 등이 더 필요하지 않나?	○ 기본재산 등이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을 귀속받게 되면 출범과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실무협의회에서 추후 잘 검토하겠음.
○ 지방행정연구원은 시도별로 균등하게 부담하고 있는데, 재정력지수나 예산 규모 등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시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을 건의하겠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수정안 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